

대법원장 지침 06-03
2016년 5월 개정됨
2023년 3월 개정됨

COLORADO 주 대법원

대법원장실

COLORADO 주 법무부 통역사 및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의 법정 접근에 관한 지침

본 지침은 Colorado 주 법원이 언어 지원 사무소(Office of Language Access, "OLA")를 통해 제공 및 임명한 통역사의 활용 및 비용 지불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의 법정 절차 및 법정 업무 접근을 관리할 목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I. 정의

- I. A. **허가 통역사(Authorized Interpreter)** - 공인되고, 자격을 갖추고, 적합 또는 등록된 통역사로 OLA가 독립 계약자 또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OLA가 관리하는 활동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OLA 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사람.
- I. B. **이중 언어 직원(Bilingual Staff)** - 직원 통역사가 아닌 Colorado 주 법무부 근로자로 OLA의 기준에 따른 영어 및 제2언어의 능력이 증명되고, OLA가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와 영어 외 언어로 직접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한 사람.
- I. C. **공인 통역사(Certified Interpreter)** - 최소 전문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통역사로 Colorado 주 법무부가 인정하는 통역사 구술 자격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고, OLA가 관리하는 공인 통역사 활동 명단에 등록되어 Colorado 주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람.
- I. D. **직원 통역사(Classified Staff Language Interpreter)** - Colorado 주 사법부 인사규정(Colorado Judicial System Personnel Rules)에 의해 고용이 관리되는 근로자로, 수행하는 업무가 부서 분류 및 보상 플랜에 포함되는 사람.
- I. E. **법정 업무(Court Operations)** - 법원 및 보호관찰(법정 절차 제외)에 의해 관리 또는 수행되는 법원 사무소,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대중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접촉을 포함.

- I. F. **법정 절차(Court Proceeding)** - Colorado 주 법원의 조치, 항소, 기타 절차(법관 수행 사안 포함) 전 심리, 재판 또는 기타 출두 행위.
- I. G. **자격 보유 통역사(Credentialed Interpreter)** - 사용 언어 구술 능력 시험에서 최고의 자격을 인정받고, OLA의 기준에 따른 추가 요건을 충족한 통역사.
- I. H. **독립 계약 통역사(Independent Contract Language Interpreter)** - 계약에 따른 독립 계약자이거나 IRS Revenue 판결 87-41에 따른 허가 통역사.
- I. I. **통역(Interpretation)** - 한 언어의 구두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옮기는 행위.
- I. J. **법관(Judicial Officer)** - 법정 절차를 주재하도록 허가된 판사, 재판관, 치안판사 또는 수역 판정관.
- I. K. **언어 서비스(Language Services)** - 통역사, 이중 언어 지원 또는 번역 수단을 통해 보다 용이한 법정 서비스 접근을 돋는 지원 행위.
- I. L.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며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개인.
- I. M. **이해관계인(Party in Interest)** - 사건 당사자, 피해자, 목격자,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 및 법적 후견인 또는 관리인, 성년 당사자의 법적 후견인 또는 관리인.
- I. N. **적합 통역사(Qualified Interpreter)** - 공인 또는 자격 보유 통역사가 없는 경우, 공인 또는 자격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교육 요건 및 OLA가 제시하는 최소 구술 자격시험 점수를 충족해 법정 통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역사. 적합 통역사는 OLA가 관리하는 적합 통역사 활동 명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I. O. **등록 통역사(Registered Interpreter)** - 공인 또는 자격,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허가 통역사. 해당 통역사는 언어 결합에 대한 공인 또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I. P. **원격 통역(Remote Interpreting)** - 통역사가 현장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나 음성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법정 절차 또는 법정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

- I. Q. 번역(Translation)** - 한 언어의 서면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비실시간으로 옮기는 행위.
- I. R. 피해자(Victim)** – 범죄 행위 혐의의 피해자, 피해자가 지명한 사람, 법적 후견인, 보호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직계 가족,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부모 및 법적 후견인 또는 보호자.

II. 통역사 임명

- II. A. 법정 절차** - 1964년 민권법 제6장(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 1968년 각종 범죄 단속 및 길거리 치안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Safe Streets Act") 및 행정명령 제13166호(65 Fed. Reg. 50121, 2000년 8월 16일)에 따라, 법원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법정 절차 또는 그 부수 절차 진행 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배정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피고인과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간 준비기일(pre-trial conference) 등 법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법정 출두 또는 절차 연기 논의 직전에 탄원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법관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원활화.
- 의뢰인과 대법원장 지침(Chief Justice Directives, "CJD") 04-04 및 04-05에 따라 임명된 국선변호인 간의 의사소통 원활화.
- 가정법원 촉진 및 중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법정 의무 프로그램에서 이해관계인과의 소통 원활화.
- 결정 전 법정 보조 목적으로 지시 또는 수행되는 검토 및 수사 종결.

- II. B. 비(非)이해관계인** - 법원은 재량으로 법정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II. C. 법정 업무** - 법원 직원은 본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가 법정 업무 접근을 모색하는 경우, 이중 언어 직원 또는 허가 통역사의 직접 또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통역 서비스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 서비스는 유형, 수단, 중요성, 의사소통 기간에 관해 OLA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I. D. 본 지침의 섹션 II.A 및 II.B의 범위를 넘어선 의사소통 - 섹션 II.A 및 II.B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법정은 향후 절차에서 배경 정보, 수사, 재판 준비, 목격자 인터뷰, 의뢰인 대행 목적으로 LEP를 포함한 변호인, 검사, 사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정 절차 또는 그 부수 절차 진행 시 언어 통역, 보호관찰 처리 관련 의사소통, 섹션 II.A에 명시된 법정 절차 또는 부수 절차의 일부가 아닌 기타 의사소통을 준비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해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및 당사자의 변호인은 CJD 04-04 및 04-05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사건 준비 및 법정 절차 밖에서 본인의 비용으로 당사자와 일반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통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II. E. 허가 통역사 - OLA 또는 피지명자에게 통역사 임명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원은 OLA 또는 피지명자가 임명한 허가 통역사의 서비스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III. 직원 통역사 배정

주 법원행정처는 OLA의 전일제 환산 통역사 배치 계획(FTE Allocation Plan Corresponding to Language Interpreters)에 따라 사법 관할 구역에 직원 통역사를 배정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 법원행정처장의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2011년 7월 11일 이후에 신규 채용된 모든 분류 직책의 통역사는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독립 계약 통역사 계약서(Agreement for Independent Contractor - Language Interpreter) 양식을 이용한 독립 계약 형식으로 비(非)사법 근로자 계약 통역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IV. 통역사 자질

IV. A. 법원은 통역사 보상 방식 또는 통역사가 출두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법정 절차 및 업무에서 허가 통역사 외 개인이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IV. B. OLA는 통역사가 공인되고, 자격을 갖추고, 적합 또는 등록된 통역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OLA는 자질 및 이용 가능성 단계를 포함한 모든 허가 통역사의 명단을 최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OLA는 법원 및 대중이 최신 명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 지침 06-03
2016년 5월 개정됨
2023년 3월 개정됨

보장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승인 조건으로 CJD 05-05 및 통역사 교육 및 전문적 실무 지속에 관한 정책(Continuing Education and Professional Practice Policy for Interpreters)에 따른 의무 승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IV. C. 가능한 경우, 법원은 모든 법정 절차에 필요한 언어에 대해 공인 또는 자격이 있는 통역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OLA는 다음과 같이 직접 통역 또는 원격 통역을 하도록 허가 통역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반경 25마일(40.23km) 내에 거주하며 필요 언어를 구사하는 공인 또는 자격 보유 통역사가 5명 이상인 경우, 법원은 해당 언어 통역이 요구되는 모든 절차에 통역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모든 기타 법원은 공인 또는 자격 보유 통역사가 Colorado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든 1급 중범죄 절차에 공인 또는 자격 보유 통역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3. 법원은 공인 또는 자격 보유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거나 이들이 지방 사법권 근무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지침 섹션 IX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타 절차에서 해당 통역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4. 공인 또는 자격 보유 통역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OLA가 관리하는 적합 통역사 활동 명단에 기재된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공인, 자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통역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등록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통역사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V. 다중 언어 통역사 지정

V. A.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법원은 통역사의 피로 호소 및 이로 인한 통역 정확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유형의 절차에서 2명 이상의 통역사를 지정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2시간 이상 예정된 절차.
2. 여러 LEP 이해관계인이 심리가 중요한 절차(예: 목격자 증언, 신청 등)에서 변호인-의뢰인 자문 통역을 요구할 경우.

3. 다중 언어가 사용되는 절차.

V. B. 다음 가이드라인 및 제약은 2명 이상의 통역사 활용 시 적용됩니다.

1. 여러 LEP 이해관계인과 2시간 이상 진행하는 절차를 포함한 모든 재판에서 동시통역 전자 장비 사용이 모범 사례로 권장되는 경우. 또한 피해자 및 부모 또는 후견인이 추가 통역사의 도움 없이 통역된 절차에 출두하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
2. 여러 LEP 이해관계인과의 절차에서 한 개 언어의 통역이 요구될 시, 동시통역 제공에 활발히 이용되지 않는 통역사는 필요한 경우에 변호인-의뢰인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LEP 이해관계인과의 절차에서 목격자 증언에 통역이 요구되는 경우, 법원은 제3의 통역사를 해당 목적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통역사는 비밀 유지 및 공평무사 서약을 하고 법원 직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동일 재판에서 한 명의 통역사를 한 명 이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통역사가 동일 재판 내 다른 당사자를 위한 법정 절차를 통역한 경우라도 다른 통역사를 임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6. 이해관계인은 변호인-의뢰인 의사소통을 원활화하거나, 법원이 제공한 통역 서비스를 능가하는 통역을 희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 및 배정할 수 있습니다.

VI. 원격 통역

VI. A. 전화 및 음성 통역을 포함한 원격 통역은 다음에 명시된 조건의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의 법원 접근 원활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용 가능한 구술 통역 서비스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 절차 및 기타 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VI. B. 원격 통역을 진행하는 통역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된 기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섹션 IV.C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VI. C. 법원은 원격 통역이 본 지침 및 기밀 의사소통 기준을 포함한 OLA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하며 법관, 당사자, 변호인, 목격자가 서로의 의견 및 통역을 정확하게 듣고

대법원장 지침 06-03

2016년 5월 개정됨

2023년 3월 개정됨

이를 명확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VII. 번역

법정 절차, 법원에 제공된 비(非)영어 서면 진술서, 법원에 필요한 표지판 및 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서면 정보 번역은 OLA의 번역 및 이중 언어 표지판 정책(Translation and Bilingual Signage Policy)에 따라 작성됩니다.

VIII. 법정 통역 및 번역 비용 지불

독립 계약 통역사 및 번역사는 OLA의 통역사 보상 정책(Interpreter Compensation Policy)에 따라 비용을 지불받습니다. 법관 또는 법원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법정 업무 과정에서 언어 서비스를 받는 이해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거나 LEP에게 그러한 비용을 법원 또는 주에 상환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IX. 언어 통역사 자격 박탈

IX. A. 법관은 통역사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재판 착수 시 또는 절차 도중 통역 자격을 박탈하고, OLA는 통역사의 법정 업무 통역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1. 법원 직원, 이해관계인, 기타 참석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경우로, 통역사 본인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는 경우도 포함.
2. 사건 관계인 또는 결과와의 관계로 인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3. Colorado 주 법정 통역사의 전문적 책임에 관한 규정(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Colorado Court Interpreters)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공인, 자격, 상태 또는 적합성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법정 통역사 규율(Court Interpreter Discipline Policy)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지정된 절차 또는 법정 업무를 통역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IX. B. 법관은 통역사가 절차에 관한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즉시 OLA에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IX. C. 법관 또는 OLA가 통역사의 자격을 박탈한 경우, 법원은 대체 통역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X. 민원 절차

본 지침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OL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OLA의 언어 접근성에 대한 민원 제기 절차(Procedures for Processing Language Access Complaints)에 따라 검토 및 조사됩니다. 본 지침의 어떠한 내용도 위법이 발생한 절차 또는 절차의 후속 검토 도중 법관의 지침 시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관리 통역사는 모든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민원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XI. 접근 보장을 위한 역할 및 책임

XI. A. 모든 법관은 모든 절차에서 본 지침의 요건을 시행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XI. B. 주 법원행정처장 또는 피지명자는 주 법률 및 대법원장의 추가 지시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직원이 이해관계인 및 법원 직원에게서 언어 정보를 취합하고,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언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통지하는 것에 관한 일관적인 주(State) 요건을 수립 및 관리해야 합니다.

XI. C. 법원행정처 또는 피지명자는 주(State) 요건에 따라 LEP의 지역 법원 언어 접근 제공을 관리하고, OLA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법원 직원에게서 언어 수요 정보를 취합하고, 모든 법정 절차에 언어 통역사 서비스를 예약 및 조정하고, 모든 기타 법정 업무의 언어 접근을 원활화해야 합니다.

XI. D. 최고 보호관찰관 또는 피지명자는 각 사법 관할 구역에서 LEP의 보호관찰 서비스 언어 접근 제공을 관리해야 합니다.

XI. E. OLA 의무 사항:

1. Colorado 주 법원에서 언어 접근 제공과 관련된 법원, 법원 직원, 통역사, 대중, 정책 및 절차 제공. 본 정책 및 절차는 법정 절차에서의 언어 접근 계획, 번역, 원격 통역, 디지털 파일 통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통역사 교육 및 시험 감독 및 가장 적합한 통역사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OLA 웹사이트에 현역 허가 통역사 명단 게재.
3. 모든 사법 관할 구역의 LEP 법원 및 보호관찰 서비스 접근 제공을 돋기 위해

대법원장 지침 06-03

2016년 5월 개정됨

2023년 3월 개정됨

Colorado 주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될 수 있도록 법원 및 보호관찰에서
자주 사용되는 번역 양식 제공.

XI. F. 관리 통역사는 주 정책에 따라 영어 및 통역이 가장 많이 필요한 언어의 통역
서비스 유용성과 관련한 표시를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개시되거나
합리적으로 출두 또는 변론 기한 전에 LEP의 법원 및 보호관찰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LEP에게 통역사 서비스 유용성을 통지해야 합니다.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2023년 3월 6일 Denver, Colorado에서 작성되었습니다.

/s/

Brian D. Boatright, 대법원장